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 2004. 06. 16.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6. 10. 07.

개정 : 2019. 04. 05.

담당자 : 산학협력단 (02-950-5424)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 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이사)	제5조2(감사)	제6조(단장)	제7조(단장의 직무대행)
제8조(기구)	제9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제10조(구성)	제11조(기능)
제11조의2(의사정족수)	제11조의3(위원회의 소집)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3조(운영재원)
제14조(수입)	제15조(지출)	제16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2(회계관리)	제17조의3(회계기관)	제17조의4(지출방법)
제18조(예·결산서 제출)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정관의 변경 등)	제21조(해산)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3조(시행세칙)	제24조(공고의 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학칙 제76조의2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성립되며, 한국성서대학교 교육이념인 밀알정신에 입각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 대학교육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영유아보육사업 수탁업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개정 16.10.07)
10.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16.10.07)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② 산업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5조2(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둔다.(신설 19.04.05)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6조(단장) ① 단장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구)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개정 19.04.05)

- 제10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기획실장, 사무처장, 교학처장, 교목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업무에 관한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2(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04.05)

제11조의3(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신설 19.04.05)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19.04.05)

제4장 보 상 금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4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6. 이자수입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5조(지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지출로 한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6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증여,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4. 기타재산관리 및 처분

제17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7조2(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신설 19.04.05)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04.05)

제17조의3(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신설 19.04.05)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04.05)

제17조의4(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신설 19.04.05)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신설 19.04.05)

제18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관의 변경 등)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고의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교 신문 또는 홈페이지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